

의안번호	제 893 호
의 결 연 월 일	년 월 일 (제 회)

충청북도교육청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 의 자	박성원 의원 등 7인
발의연월일	2021년 10월 29일

# 충청북도교육청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성원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893
----------	-----

발의연월일 : 2021년 10월 29일

발 의 자 : 박성원, 최경천, 김국기,  
김영주, 이수완, 임동현,  
정상교 의원

## 1. 제안 이유

교복지원 대상 학교에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을 포함함으로써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학생의 교육복지를 증진하고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에 기여하고자 함.

## 2. 주요 내용

가. 학교의 정의에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을 추가함(안 제2조)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붙임

나. 비용추계: 비용추계서 붙임

다. 관계부서 협의: 충청북도교육청 교육국 학교자치과

## 충청북도교육청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조제1호 중 “각종학교를” 을 “각종학교와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충청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 이라 한다)이 지정한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을” 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초·중등교육법」 제8조에 따른” 을 “제1호에 따른 학교에서” 로 한다.

제3조 중 “충청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 이라 한다)” 을 “교육감” 으로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조례의 개정 규정에 따른 교복 지원은 2022학년도에 입학, 전입, 편입학하는 1학년 학생부터 적용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중 충청북도 내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u>각종학교</u>를 말한다.</p> <p>2. “교복”이란 「<u>초·중등교육법</u>」 제8조에 따른 학교규칙으로 정하여 학생이 입도록 한 단체복을 말한다.</p> <p>3. (생략)</p> <p>제3조(교육감의 책무) <u>충청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u>은 학생 교복 지원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p>	<p>제2조(정의) ----- -----.</p> <p>1. ----- ----- ----- ---- <u>각종학교와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충청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지정한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을</u> -----.</p> <p>2. ----- <u>제1호에 따른 학교에서</u> ----- ----- -----.</p> <p>3. (현행과 같음)</p> <p>제3조(교육감의 책무) <u>교육감</u>----- ----- ----- ----- -----.</p>

# 관계 법령

## □ 교육기본법

[시행 2019. 6. 19.] [법률 제15950호, 2018. 12. 18., 일부개정]

제27조(보건 및 복지의 증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 및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 □ 평생교육법

[시행 2014.3.18.] [법률 제12449호, 2014.3.18., 일부개정]

제31조(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①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설비를 갖추어 교육감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중 일정 기준 이상의 요건을 갖춘 평생교육시설에 대하여는 이를 고등학교졸업 이하의 학력이 인정되는 시설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제6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은 보조금을 목적 외 사용, 부당집행하였을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5. 3. 27.>

③ 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는 「초·중등교육법」 제19조 제1항의 교원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교원의 복무·국내연수와 재교육에 관하여는 국·공립학교의 교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④ 「초·중등교육법」 제54조제4항에 따라 전공과를 설치·운영하는 고등기술학교는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전문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학위가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로 전환·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전공대학의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⑤ 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지정 및 지정취소 기준·절차, 입학자격, 교원자격 등과 제4항에 따른 평생교육시설의 인가 기준·절차, 학사관리 등의 운영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 3. 27.>

⑥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에 준하여 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 필요한 보조금을 교부하거나 그 밖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5. 3. 27.>

⑦ 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로 지정을 받은 자가 그 시설을 폐쇄하고자 하는 때에는 재학생 처리방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갖추어 관할 교육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⑧ 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재산관리, 회계 및 교원 등의 신규채용에 관한 사항은 각각 「사립학교법」 제28조, 제29조 및 제53조의2 제9항을 준용하고, 장학지도 및 학생의 학교생활기록 관리는 각각 「초·중등교육법」 제7조 및 제25조제1항을 준용한다. 다만, 교비회계에 속하는 예산·결산 및 회계 업무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방식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5. 3. 27.>

# 충청북도교육청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 1. 재정수반요인

조례 개정안에 따라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 입학하는 학생에게 교복을 지원할 경우 이에 따른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

## 2. 비용추계 결과

### 가. 추계 결과

연간 소요비용 추계		연도별 소요비용 추계(단위: 천원)					
산출기초	합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합계
1. 교복비 지원	148,479	29,400	29,547	29,695	29,844	29,993	148,479
가. 교복비 지원	148,479	29,400	29,547	29,695	29,844	29,993	148,479

### 나. 산출근거

(단위:원,명)

구분	단가	학생수	금액	비고
2022년				
고1학년 신입생	300,000	98	29,400,000	
합계		98	29,400,000	
2023년				
고1학년 신입생	301,500	98	29,547,000	
합계		98	29,547,000	
2024년				
고1학년 신입생	303,008	98	29,694,784	
합계		98	29,694,784	
2025년				
고1학년 신입생	304,523	98	29,843,254	
합계		98	29,843,254	
2026년				
고1학년 신입생	306,045	98	29,992,410	
합계		98	29,992,410	

- 2022년 교복 학교주관구매 권고 예산 지원 단가 기준 및 한국은행 소비자 물가상승률 반영 (2020년 0.5%, 매년 0.5% 추정치 반영)
- 학생수는 현재 재학현황 및 학과개편 정원 반영

### 다. 재원조달방안: 보통교부금

## 3. 연도별 비용추계표 : 붙임

## <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2년)	2차년도 (2023년)	3차년도 (2024년)	4차년도 (2025년)	5차년도 (2026년)	계	
세 입	29,400	29,547	29,695	29,844	29,993	148,479	
보통교부금	29,400	29,547	29,695	29,844	29,993	148,479	
세 출	29,400	29,547	29,695	29,844	29,993	148,479	
교복비지원	29,400	29,547	29,695	29,844	29,993	148,479	
재원 조달							
의존 재원	소 계	29,400	29,547	29,695	29,844	29,993	148,479
	국고보조금						
	보통교부금	29,400	29,547	29,695	29,844	29,993	148,479
	특별교부금						
자체 수입	소 계						
	자체수입						
지방채							
기 금							
기 타 (차입금 만자 예비비 등)							